

연구교수·연구원 임용 규정

제정 1998. 09. 03.

제8차 개정 2022. 04. 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연구교수·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6.1.4)

제2조(정의) 본교 부설 연구소(원)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임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1. 연구교수 : 정부, 정부출연기관, 비영리학술재단으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전담하는 사람 (신설 2004. 9.21)
2. 연구원 : 본교 부설 연구소(원)에서 주로 연구를 전담하는 사람 (신설 2004.9.21.)
(조 변경 2003.5.23)

제3조(구분 및 임용자격) 연구교수·연구원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상임연구원 :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
2. 연구교수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(신설 2003.5.23.) (개정 2006.12.4)
3. 전임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(변경 2003.5.23.) (개정 2006.12.4)
4. 객원연구원 : 본교 이외의 타대학 교원, 관련기관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 (신설 2006.12.4)
(조 개정 2003.5.23)

제4조(신분) 제3조의 전임연구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 교원과는 구분하나 교원에 준한 신분을 가진다.

제5조(임용절차 및 기간) ① 상임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구소(원)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**교무연구처장**이 임면한다. (개정 2006.12.4., 2007.11.8., 2019.06.25., 2022.04.20)

② 연구교수·전임연구원·객원연구원은 해당 연구소(원)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**교무연구처장**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 (개정 2003.5.23, 2006.12.4., 2007.11.8., 2019.06.25, 2022.04.20)

③ 연구소(원)장은 연구교수·전임연구원·객원연구원의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**교무연구처** 교무·연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3.5.23, 2006.12.4., 2007.11.8., 2019.06.25, 2022.04.20)

1. 이력서 1부.
2. 최종학위증명서 1부.
3. 경력증명서 1부.
4. 연구소장 추천서 1부.
5. 연구참여 실적 및 수행계획서 각 1부. (신설 2003.5.23)

④ 연구교수·전임연구원·객원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. (개정 2003.5.23, 2006.12.4)

⑤ 재임용 할 경우 연구소(원)장의 추천서로 제3항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나 연구 참여 실적 및 수행계획서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3.5.23, 2006.12.4)

제6조(처우) ① 연구교수·전임연구원·객원연구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연구비로 충당한다. (개정 2006.12.4)

② 연구교수는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(조 변경 2003.5.23)

제7조(역할 및 활용) ① 연구교수는 연구를 전담하되, 본교 강의시 1강좌는 무보수 강의 지원이 가능하다. 다만, 1강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래교수에 준하는 강의수당을 지급하며, 최대 2강좌를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타교 강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, 부득이한 경우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협력처장을 경유하여 **교무연구처장**의 승인을 받아야 출강할 수 있으며, 강의는 1강좌로 제한한다. (개정 2006.12.4., 2019.06.25, **2022.04.20**)
(조 신설 2005.4.27)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(조 개정 2005.4.27)

부칙

이 규정은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0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부설연구소연구원임용규정에 의거 임용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임용으로 본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453, 2005.4.27)

이 규정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0, 2006.1.4)

이 규정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143, 2006.12.4)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182, 2007.11.9)

이 규정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57, **2022.04.20.**)

이 규정은 **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**